

FTA와 무역피해근로자 지원제도

김 승 택*

1. 서론

최근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각 산업부문마다 이해득실이 다르게 계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 EU, 일본 등 국내 수출입이나 세계 무역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국가들과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재 시점에서 FTA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이나 고용의 구조조정에 대해 미리 대처하는 정책적 수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는 FTA로 인한 경제성장과 이익을 누리게 되더라도 이러한 변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부문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이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 결사적인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 FTA의 피해를 그대로 감수하게 하는 것 또한 형평성에 있어 문제를 가진다. 따라서 FTA를 통해 국가적으로 이익을 추진하는 한편,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 기업 또는 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FTA의 긍정적 효과로 지적되는 규모의 경제와 경쟁력의 확보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직면한 동종기업들 간의 경쟁 압력이 증가하면서 산업구조조정이 촉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은 과거보다 커진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게 되는 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기업은 더욱 빠르게 시장에서 퇴출된다. 따라서 생산물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의 경우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의 규모가 증가하거나 관련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반면,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 및 퇴출되면서 실직자의 증가, 근로조건 악화 등의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stkim@kli.re.kr).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FTA로 인해 위기로 몰리는 부문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이 저임금·저숙련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편 FTA가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모형에 의해 추정할 때 관세철폐에 의한 생산 증가로 나타나는 고용규모의 확대가 구조조정에 의해 실직하는 고용감소보다 많이 나타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취약부문에서 발생한 실직자가 고용증가 부문에 취업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자국 경제내 생산요소들의 산업간 이동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실직이 발생한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부문으로의 이동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원리에 따른 이론대로라면 FTA에 의해 생기는 부작용은 생산요소의 이동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면서 해결될 수 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완전한 생산요소의 이동에 가까운 현실을 만들기 위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 및 고용서비스의 제공은 중요하며, 특히 직업훈련, 소득보조, 구직 서비스의 적합한 배합과 균형이 효율적인 재고용을 성공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분석에서는 FTA로 인해 노동시장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선 폭넓은 개념의 무역피해근로자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기존의 고용보험제도에서 무역피해근로자 지원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개편을 제안한 후, 그 외 고용보험제도가 포함하고 있지 못한 계층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정책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무역피해근로자 지원정책의 개념적 틀

경제통합이나 FTA 등의 제도 변화로 지역경제나 기업 및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그 피해에 대한 지원을 통해 FTA에 대한 반대의견을 완화시키고, 또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대상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구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FTA를 추진할 때마다 그 협상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보게 되는 이해집단 중에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집단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FTA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집단의 경우에는 정부의 제도적인 구제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입법화된 「무역조정지원법」은 제조업과 관련 산업에 있어 FTA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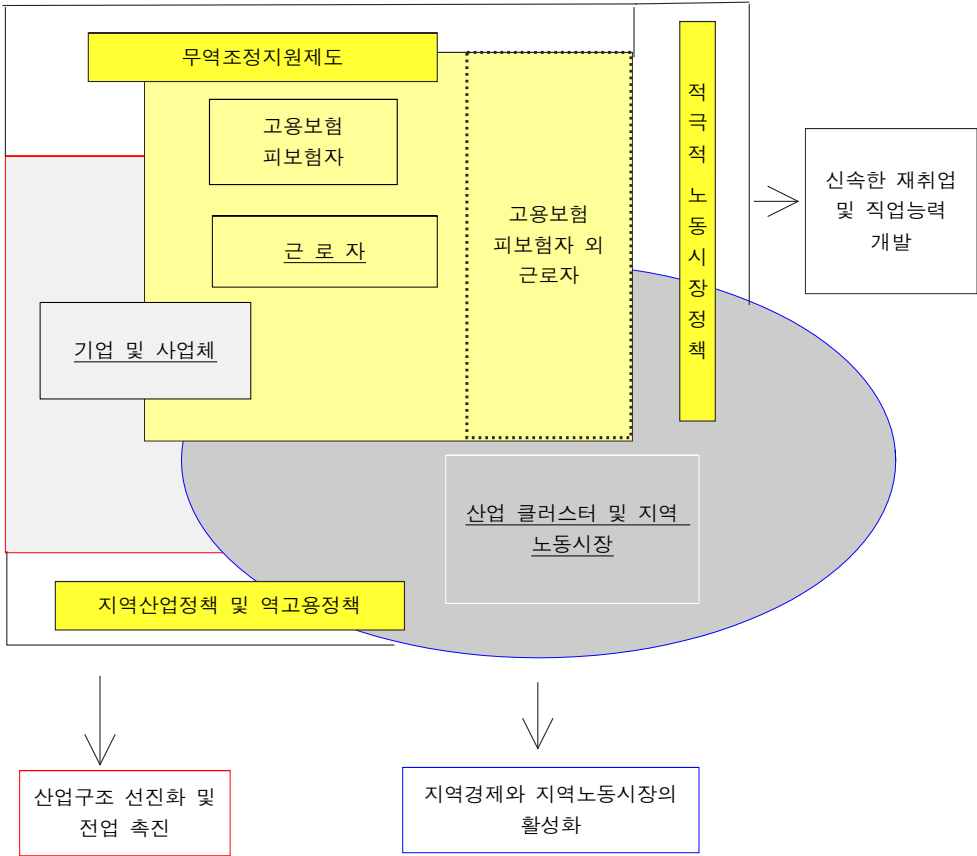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FTA와 개방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경쟁력의 향상은 필수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가 발생할 때 주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과 저임금·저숙련 근로자들이 먼저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FTA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취약계층과 한계기업에 대한 기존 정책들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FTA가 아닌 다른 정부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가 명백한 경우는 피해집단에 대한 보상을 동반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며, 피해가 더 크거나 재취업이나 회생의 가능성이 낮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FTA에 대한 피해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은 보편적 정책시행 과정의 논리와도 합당하며, 또한 FTA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협상 체결을 반대하는 집단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정치적인 의미와 함께 개방의 순기능인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FTA로 인해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기본적인 고용서비스(취업알선과 전직지원서비스)의 강화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신속한 재취업과 직업능력 개발이 가능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기업, 근로자 외에도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파급되었을 경우, 이것은 다시 그 지역에서 취업하고 있는 다른 부문의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2차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고 해당 지역의 경제적인 쇠퇴로 인해 지역경제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시도하는 지역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더하여 FTA의 기본적 취지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부문의 근로자들에게 전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 등을 시행한다. 이러한 지원제도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FTA로부터의 피해가 어떤 부문에 발생하더라도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과연 무역조정과 관련된 피해근로자들에게만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 FTA가 가져올 피해에 대한 규모가 불명확하고 또한 소규모에 그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 대한 재정적 효율성의 문제, 또한 이런 포괄적인 사업 추진은 단지 실직자의 구제라는 측면보다 해당 지역에 있어 항시적으로 필요한 지역경제정책이나 지역 고용정책의 내용으로 FTA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행할 만한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

[그림 1] 무역조정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근로자피해지원제도의 개관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이 항상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사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는 협상의 내용에 따라 미치는 효과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이 협상은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추진을 하지 않거나 협상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타결되는 FTA를 가정할 때 무역조정에 대한 피해지원제도는 대규모로 설계되기보다는 기본적인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고안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제도는 유연한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피해근로자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판단되는 지원제도(기존 사회안전망을 개편한 소득보전과 전직지원 등의 고용서비스)가 우선 제공되도록 하고, 직접지원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의 확충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한 후, FTA가 발효되었을 때 실제 나타나는 피해규모와 정도에 따라 기본사업의 내용을 확대할 것인지 또는 유지 내지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다시 고려하는 방식이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이런 방식의 정책 제안을 위해서는 무역조정지원법이나 관련 제도들을 한시적인 법령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재조정 및 개정을 정기적으로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상황의 변화에 대한 관찰·분석·연구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무역조정지원법에는 피해발생 현황과 통계, 그리고 제도 진행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Ⅲ.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무역피해근로자 지원방안

FTA로 인해 실직하거나 실직할 위기에 달한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고용보험제도가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은 현재 전직지원장려금, 실업자재취업훈련지원금,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한 실직자직업훈련제도, 실업급여 등이 존재한다.¹⁾

1. 전직지원장려금

우선 고용안정사업 중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²⁾ 전직지원장려금 제도의 목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정년퇴직,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이직(예정)근로자에게 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정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이직했거나 이직예정인 자에게 전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2/3(대규모기업은 1/2)를 12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 상한액은 1인당 300만원이다.

이 사업의 경우 2001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직지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직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원제도 도입 이후 비록 매년 지원금 지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나³⁾ 아직도 지출계획에 비해 2005년 예산의 집행률이 41%에 그치고 있어 지원을 받는

1)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한 부록을 참조.

2) 고용안정사업에 있어서는 특정 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제도에도 FTA 피해근로자들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사업들을 개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본문에 언급하지 않은 사업으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이 있다.

3) 연도별 지원추이(백만 원) : 43('01) → 432('02) → 641('03) → 1,428('04) → 1,514('05), 2005년도에는

기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집행률이 낮은 원인으로 노동부는 근로자의 전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신청 요건이 까다로워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전직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우며, 여전히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노동부는 사업주의 지원요건인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의 세부 사항은 재고량 50% 이상 증가에서 10% 이상 증가로, 생산량 또는 매출액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바꾸어 시행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⁴⁾ 또한 지원수준을 인상하여 사업주 소요비용의 2/3(중소기업)~1/2(대기업)에서 → 3/4~2/3로 바꾸어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전직지원서비스를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민간 전문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사업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따라서 지금도 FTA로 인해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로 감소하여 피해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전직지원장려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더욱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와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의 사업주’로 바꾸고, 보다 충실한 전직지원을 위해서는 FTA 피해기업의 경우 전직지원장려금을 요구할 경우 자격조건을 더욱 완화시켜 주던가,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지원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여 소요비용의 2/3가 아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실업자재취업훈련지원금

직업능력개발사업⁵⁾의 하나로 실업자재취업훈련지원금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

28개 사업장에 대하여 1,514백만 원을 투입하여 1,440명의 재취업을 지원했다.

- 4) 이와 관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06. 1. 1)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다.
- 5)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 인력양성사업으로 교육훈련기관이나 고용서비스기관에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고용보험을 납부하던 모든 실직자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으로 FTA 피해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개편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문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 사업들로는 고급인력정보센터 보조,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훈련 민간훈련지원, 기능대학위탁훈련 위탁훈련비 지원, 정부위탁훈련 민간훈련기관 위탁훈련, 정부위탁훈련 대한상의 위탁훈련, 성장동력산업 중급기술인력 양성 등이 있다. 이 사업들 외에도 기존의 능력개발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들에 대해 시설이나 교과과정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또한 존재하는데 FTA 피해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인 개선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 다루기에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추후 연구로 미루고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또한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하여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의 제도가 있으나, 여기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는 실직자들에 대한 사업들만을 다루어 FTA에 의해 실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있던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실업자의 재취직·창업 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훈련 실시 과정에 대하여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을,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에는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2005년에 실업자재취업훈련지원금 사업은 전직실업자 64,179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여 당초 훈련목표인원 54,395명 대비 118.0%를 기록하였고, 훈련인원 64,179명 중 18,567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47.7%를 기록했으며, 2005년도 실업자훈련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인 훈련 만족도에 대하여 보통 이상이 81.9%를 기록하여 상당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간 실업자훈련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지역과 수요자 중심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집행기능이 미흡하여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훈련실시에는 부족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현행 실업자훈련 실시체계를 재검토하고 지역별 훈련수요를 반영한 지방청별 자율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개선책으로 노동부는 지역특성별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2005. 11. 7) 중이다. 이 개선책에 의하면 지방청의 자율 및 재량권이 확대(실업자훈련의 지방화·분권화)되고, 지방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며, 본부에서는 지방청별 훈련계획을 심사 후 예산 배정 및 사업 평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훈련과정 승인을 반기에서 연간계획으로 승인하고, 훈련수요 발생 시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토록 개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서 기존 제도만으로도 FTA로 인한 실직자들에게는 실업자재취업훈련지원금의 혜택이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이 훈련기관에서 작성하는 훈련계획서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욱 다양하고 적절한 재취업교육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의 확보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⁶⁾ 또한 실직자들에게 이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도 FTA로 인한 실직자로 판명이 될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교통비와 식비정도가 지급되는 훈련수당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당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재고해야 한다.

3.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한 실직자직업훈련제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중에는 보다 세부적인 직업훈련의 제공을 위해 훈련기관에 훈련에

6)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역조정이 이루어진 영향으로 또는 그 외 경기적인 요인에 의해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부문의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여기서 훈련을 받는 수강생들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가 구체적인 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여기에는 훈련의 대상이 실직자들인 경우 지원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훈련비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훈련 기능사양성과정 훈련수당, 기능대학 위탁훈련 기능사양성과정 훈련수당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훈련비 지원은 산업사회의 기술변화 및 고용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여 무기능자, 실업자, 재직근로자 등에 대한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15세 이상 비진학청소년, 실업자 등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공하는 기능사양성과정 등 10개 과정⁷⁾에서 약 22,730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때의 훈련비용을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이다.

2005년의 실적은 기능사양성(주·야간)과정 훈련실시인원 8,741명으로 목표대비 훈련 실적을 초과달성하였다. 현재 청년실업 증가 등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적기에 양질의 훈련자원을 확보하는 등 훈련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대 청년실업자 비율의 증가와 인문고 위탁생 비율의 감소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실업자, 비진학청소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군 전역사병 및 여성, 북한 이탈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기능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한편 전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프로그램, 주부 및 준·고령자 등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기회제공을 위한 고령자과정,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e-learning 활성화 및 학습미디어를 구축하는 중이다. 또한 컨소시엄 방식의 직업전문채널 구축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직업정보, 구인·취업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훈련 기능사양성과정 훈련수당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훈련생이 기능사양성 훈련기간 동안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국가기간산업 분야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수준은 기능사양성(주·야간)과정 7,870명에 대해 훈련수당으로 20만 원(위탁생 10만 원)과 교통비 5만 원이 지급된다.

기능대학 위탁훈련 기능사양성과정 훈련수당은 3D 직종 등에 대한 훈련 및 취업기회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능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7) 기능사양성과정 : 7,870명(주간 : 6,870명, 야간 : 1,000명)

지식기반전문과정 : 900명(양성 : 300명, 향상 : 600명)

기타과정 : 13,960명(직업체험 : 3,000명, 고령자 : 60명, 군전역예정자 : 300명, 원격화상 : 1,400명, 가상능력개발 : 2,400명, 이동훈련 : 800명, 고용촉진단기적응훈련 : 6,000명, 직업훈련방송 : 690편)

있으므로 실업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비진학 청소년 등을 주훈련대상으로 기능사를 양성하기 위한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훈련생들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기준 및 지침은 노동부가 마련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학교법인 기능대학에서 맡아서 하는데, 사업규모가 90명(주간 30, 야간 60명)에 대한 훈련수당과 800명에 대해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이다.

이와 같은 사업들의 경우 FTA로 인한 실직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FTA로 인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더욱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FTA로 인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서 필요한 신규인력의 훈련수요에 대해 분석하여, 그 내용에 대한 훈련을 공급할 수 있는 훈련기관들을 모집 내지는 공급하여 실직자들로 하여금 FTA를 통한 재취업과 연결시켜야 한다.

4.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경우 그 목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속히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원의 요건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경영상 해고·권고사직 등)로 이직한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을 하는 경우 지급한다. 지급수준 및 기간은 이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간 지급하는데, 1일 상한액은 35,000원이고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90%이다. 지급절차는 우선 이직자가 이직후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 및 실업급여수급신청서 제출)를 하고, 실업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 후, 실업신고일부터 매 2주마다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취업여부 및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후 구직급여를 수급한다.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로서 2005년 구직급여 지급자는 696천 명으로 2004년 590천 명에 비해 106천 명 증가하였고, 2005년 구직급여 지급액은 16,087억 원으로 2004년 13,334억 원에 비해 2,753억 원 증가하여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실직자가 잔여소정급여일수를 남겨놓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 재취업한 경우 잔여급여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조기재취업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실

업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내용으로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 중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재취직한 자에 대하여 잔여구직급여의 1/2을 지원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동안 1일 5,000원을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편도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소요비용(숙박비, 운임)을 지원하는 광역구직활동비, 그리고 거주지로부터 원거리에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이주비로 구성되어 있다.⁸⁾

조기재취업수당이 재취업시점에 관계없이 잔여급여의 1/2을 지급함으로써 조기재취업을 촉진하는 유인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2005년에 세워졌는데, 그 내용은 취업시점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노력을 촉진(2005년 제도개선 → 2006년 시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정급여일수를 2/3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3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정급여일수를 1/3 이상에서 2/3 미만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소정급여일수를 1/3 미만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표 1>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요건과 지급금액

		지급요건	지급금액
취업 촉진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조기에 재취직한 자	남은 구직급여액의 1/2을 지급
	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	훈련받은 날에 대해 1일당 5천 원씩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구직활동한 날에 대해 1일당 2만 원씩 지급
	이주비	원거리에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이주한 자	이사경비 지급

자료: 노동부(2006), 『2006 고용보험백서』.

8) 2005년 취업촉진수당 지급자는 100,395명으로 2004년 81,700명에 비해 18,695명 증가.
2005년 취업촉진수당 지급액은 1,432억 원으로 2004년 1,148억 원에 비해 284억 원 증가.

연장급여는 개별연장급여의 경우 구직급여가 종료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은 자 중 생활수준이 극히 곤란한 실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가 종료된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재취업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지시를 하여 당해 훈련기간 동안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으로는 개별연장급여의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장 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8세 미만자, 65세 이상자, 장애인, 1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환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자, 또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되고, 훈련연장급여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응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개별연장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지급하고, 훈련연장급여의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액의 70%를 최대 2년까지 연장지급한다.⁹⁾

한편 그동안 급여지급 중심으로 실업급여가 운영되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심층상담에 기초한 취업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심층상담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면서 연장급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추진중이다. 또한 2005년에 개별연장급여의 기초임금일액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훈련연장급여의 훈련대상 직종을 204개 기준 직종에서 서비스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한 전직종으로 확대하는 개선방안이 만들어졌다.

FTA로 인해 실직자가 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들은 기존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구직급여, 재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실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무역조정피해 실직자들의 취업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보완책으로 일단 기존 제도의 자격조건이나 수급범위 등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무역조정피해 근로자 훈련연장급여’의 창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무역조정피해 근로자에 대해 기존 실업급여가 소진되었을 때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한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하고 추가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훈련연장급여는 최대 2년 동안 구직급여의 70%를 지급받고 있는데, 무역조정피해 근로자에 대해 이를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수행하는 훈련의 시작과 종료를 고려한 지급기간을 설정한다.¹⁰⁾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 만약 무역조

9) 2005년 연장급여 지급자는 269명으로 2004년 158명에 비해 111명이 증가했고, 2005년 연장급여 지급액은 262억 원으로 2004년 159억 원에 비해 103억 원 증가했다.

10) 미국의 TAA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조기에 일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우, 앞으로 2년 이내에 정년이 되어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훈련프로그램이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소득보조는 받으나 직업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

정피해 실직자가 일반 실직자와 동일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굳이 다른 혜택을 줄 필요가 없어 추가적인 기금을 소진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훈련연장급여 수혜기간 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훈련과 소득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¹¹⁾

5. 추진 현황

노동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FTA 타결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하여 피해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심층상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 수립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고용서비스 선진화로 구축한 고용안전망(고용유지지원, 실업급여, 취업지원서비스, 전직훈련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자의 실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실직 전 단계에서 기업에게 전직지원장려금을 확대하여 지급하는 등 전직지원을 활성화하고, 훈련과정 공모제를 통한 유망직종훈련 확대 등으로 고용안정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으나 현재 소요비용의 3/4(대규모 기업은 2/3)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FTA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지정하여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실직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자를 위한 실업자훈련과정을 수시로 개설하여 훈련생 선정시 FTA 피해근로자를 우선 선발토록 함으로써 실업자의 고용촉진도 도모한다. FTA로 인한 실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의 안정을 바탕으로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훈련연장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70%를 연장 지급하도록 개편한다. 또한 별도로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훈련 실시, 실직자 채용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안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은 노동부가 추진하는 지원방안과 방향을 같이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11)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당연적용대상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에서도 구제가 가능하며, 자격조건(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경영상 해고·권고사직 등)로 이직한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을 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 실직자들에 대해 제공되는 취업알선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IV. 지원제도의 사후적 보완

여기서 논의하는 지원제도의 확대방안은 FTA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이 예상과 다르게 크게 나타나서 기존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그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후적 보완방안이다. 따라서 지원제도를 기획하는데 있어서 먼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관찰과 분석 그리고 연구가 선행된 이후 필요에 따라 시행을 추진하거나 또는 시행하지 않는 선택적인 방안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1.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

현재 고용보험제도가 비록 단계별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60% 정도의 근로자만이 제도에 포함되어 있으며(표 2 참조), 특히 자영업자와 일부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고용보험제도에서 인정하는 실직자들에게만 무역조정지원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경우 이들은 FTA의 피해 보상이나 구제 정책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FTA의 피해가 예상보다 커져서 자영업자와 같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정립하는 한편, FTA 피해에 대한 한시적인 소득보전에 대해 이들 미가입자들에게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¹²⁾

우선 고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센터의 조직과 규모를 단계별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과 동반하여 국민들 모두에게 단계별로 확산하도록 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갖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12)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FTA로 실직자가 되었다는 경우, 과연 어떻게 자격조건을 검증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무역조정지원법은 FTA로 인해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서 매출액의 감소가 정량적으로 측정되어 나타날 경우, 또는 그로 인해 고용조정을 당한 경우 등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자격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나 일용직과 같은 경우 자영업이 어느 정도의 손실에 봉착을 했는지, 또는 일용직 근로자가 일거리가 없는 이유가 경기 타인인지 FTA의 이유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FTA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는 산업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산업과 관련된 근로자나 자영업자라는 것이 증명될 때 이들을 해당자로 인정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개편한다. 따라서 현재 고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장체험, 직업훈련상담 등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층별 알선 및 지도, 상담 등의 세부 포맷을 확대하는 등의 혁신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라도 FTA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취업희망자의 경우 이와 같은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을 실행한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서비스 기능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선 FTA로 피해를 입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을 정비한다. 또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이를 홍보한다.

한편, FTA가 체결되었을 때 만약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충격이 가시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한시적인 생계유지형 소득보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들이 위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FTA의 경우 고용감소가 나타날 산업들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경우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무역조정제에 관한 지원법은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 만약 한미FTA가 오직 제조업에서만 실직자를 발생시킨다고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임금근로자가 이 부분에 해당될 것이고 이들은 다시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논의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FTA가 발효되었을 때 과연 그 피해가 어떤 근로자들에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추세 분석 및 연구를 통해 관찰하다가 피해근로자들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고용보험 또는 공공고용서비스의 확대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 소득계층별 사회보험 사각지대(미가입자)의 분포

(단위: 명, %)

	전 체	일 반	차상위	빈 곤
공적연금	40.5	36.6	71.2	79.2
	100.0 (12,053)	100.0 (11,174)	(390)	(939)
산재보험	27.4	25.2	49.9	63.1
	100.0 (7,813)	100.0 (7,231)	100.0 (213)	100.0 (369)
고용보험	57.8	56.1	75.3	86.9
	100.0 (7,737)	100.0 (7,204)	100.0 (206)	327)
건강보험	0.3	0.2	1.4	1.3
	100.0 (26,714)	100.0 (23,176)	100.0 (944)	100.0 (2,594)

주: 전체 소득계층의 %; ()안의 숫자는 표본수임.
 자료: 노대명 외(2003),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지역고용정책을 통한 지원

현재 노동부는 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수요 등 지역밀착형 정책을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고용 및 인력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차원의 노사정 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평적인 지역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노동시장 정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역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고, 지자체, 지역노사, 대학 등의 지역주체들이 지역노동시장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참여·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협력적 노사관계나 고용·능력개발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위한 법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노동부는 지역별 고용정책의 성공사례를 발굴해 내기 위해 2006년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지역 고용창출 인프라 구축 사업¹³⁾, 둘째, 지역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특화사업¹⁴⁾, 셋째,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연구사업¹⁵⁾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이 많은 성공사례를 발굴한다면 지역 노동시장 정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조는 필수적인 선결요건이 될 것이다.

만약 FTA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특정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대한 경기침체와 지역경제의 쇠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주체는 노동부라기보다는 경제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지만, 노동부의 입장에서든 현재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노동시장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과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을 해올 경우에 EU 구조기금의 사례와 같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쳐 지자체와의 1/2 매칭펀드의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제공하는 등 집행과정에 대한 도움과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13) 지역단위의 ‘지역고용포럼’을 구성하여 지역별 고용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역별 고용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개발한다.

14) 지역 전략분야에 대한 고용창출 및 능력개발사업 기획, 영세자영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지역축제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지역 제조업 공동화 극복을 위한 고용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합동현장 기술훈련, 고령자, 여성 등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5)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연구사업 평가, 지역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광역 고용지원센터 발전방안 도출, 지역노동시장 특성파악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지원은 해당 산업과 지역에 FTA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역조정피해 기업과 근로자의 발생 집중도를 지표화하여 기준을 설정하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설정되어 있는 지원에 대한 원칙(16)들에 대한 수정보완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FTA의 피해에 대한 지역고용정책을 통한 지원은 피해 산업과 지역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FTA로 인한 지역적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그 추이를 파악한 후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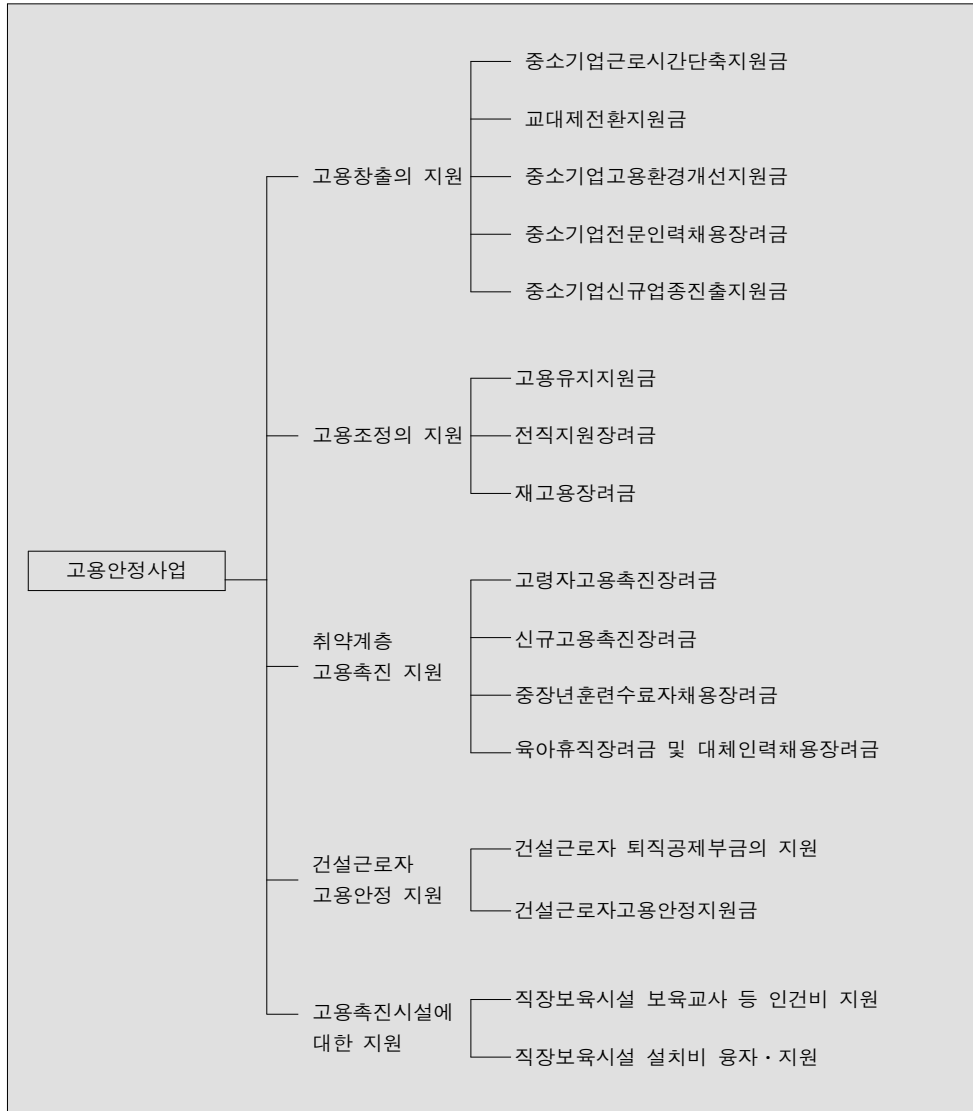
<참고문헌>

- 김승택·임혜준·박혜리(2006), 『FTA로 인한 무역피해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승택·신현구(2004),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승택(2004),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매월노동동향』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김주섭·신현구(2004), 『시범고용안정센터 성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노대명 외(2003),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동부(2006), 『2006 고용보험백서』.
- _____ (2005),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허 윤 (2005),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함의: 미국 TAA 프로그램 사례연구」, 『무역학회지』 30(3), 한국무역학회.

16) 지원제외사업, 지원수준 및 내용, 지원사업 선정절차,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사업지원, 보고서 제출, 사업점검 및 사업평가 등의 내용을 의미한다.

<부 록>

□ 고용안정사업의 체계



자료 : 노동부(2006), 『2006 고용보험백서』.

□ 실업급여의 종류

	요건	수금액
구직급여	이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2000. 3. 31 이전 이직자는 12월 중 6월 이상) ※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1억 원 이상을 지급받은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 실업급여 지급유예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전 평균임금의 50% 최고/1일 : 35,000원('00. 12. 31 이전 이직자는 30,000원) 최저/1일 : 시간급 최저임금의 90%(1999. 12. 31 이전 이직자는 최저임금의 70%)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구직급여일액과 동일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이 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일액의 70%(2000. 3 이전 : 구직급여일액과 동일하였음) - 최대 2년
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하는 등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구직급여일액의 70% - 60일 범위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일액의 70% - 60일 범위내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남긴채 재취업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1/2 ※중소기업 생산직에 취업한 경우 전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 5,00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km 이상)에서 할 경우	교통수단별 소요비용 숙박료 22,000원/1박 (2001. 12. 31 이전 20,000원)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주경비 최저 43,150원 최대 348,790원

자료 : 노동부(2006), 『2006 고용보험백서』.

□ 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취업지원 관련 주요 업무

업무 구분	업무 내용
구인구직 취업알선	구인구직 접수, 상담, 구인구직 등록, 구인업체 및 구직자료 제공, 알선(필요시 동행 면접), 결과 통보, 채용
고용정보 모니터링	일정기간 모니터링 접수건 확인, 확인된 사항 수정, 분기별 실적 합, 보고
만남의 날	행사계획안 작성, 상담, 만남의 날 행사 안내, 업체 신청서 접수 및 선정, 등록구직자 안내, 행사 준비, 행사 시행, 결과 처리/보고
청소년 직업지도	학교 홍보, 신청접수, 출장방문/검사실시, 검사결과 처리, 결과발송 및 해석담당
성인 직업지도	내방자 사전상담, 적합 직업심리검사 실시, 검사결과 처리, 해석상담, 훈련 및 취업 상담
자활지원업무	자활대상자 명단 통보, 면담요구서 발송, 상담후 진로지정, 3단계 자활지원과정 실시 의뢰, 취업알선 및 지원, 결과 통계 처리 및 보고
동행면접	구인구직 접수, 상담, 동행면접업체 및 희망구직자 접수, 알선, 업체 면접일시 지정/확인, 구직자 통보, 구인업체 방문 및 면접, 채용여부 통보
직장체험	사업장/학교방문 및 홍보, 구인신청서 접수, 직장체험 프로그램 신청자 접수,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결정, 통보 및 연수약정서 체결, 직장체험프로그램 실시, 지원금 지급의뢰 및 사후관리
직업훈련 상담	직업훈련상담신청서 접수, 직업훈련 상담(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 HRD-Net 입력, 직업상담 확인증 발급, 직업상담대장 작성
구직세일즈/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접수, 요원적격자 선정, 참여자 교육, 구직세일즈 투입, 요원 일일관리, 구직 세일즈 결과보고
공공근로 대상자 상담업무	분기별 공공근로 상담요청 접수, 일별 공공근로 상담자 지정 및 통보, 대상자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상담내역 등록, 상담자 리스트/결과 통보, 결과 조치 및 보고
직업안정법 업무	직업소개사업 및 구인업체 허가/변경신고서 접수, 모니터링 및 피해사례 접수, 요건 확인/현장점검/상황확인, 검토보고서 작성, 허가통보/시정명령/고발 등
성취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진행 준비, 성취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진행 결과 정리, 보고서 작성/보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지원	외국인 상담 접수, 구인업체 확인, 취업알선, 사후관리
탈북자 지원업무	탈북자 명단 통보, 심층상담, 구인업체 확인, 직업훈련실시 의뢰,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자료 : 김주섭 · 신현구(2004), 『시범고용안정센터 성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